

# EC市場 統合進展 狀況

資料 提供：韓國貿易協會

## I. 統合의 内容과 進展 狀況

### 1. 1992年 EC 統合目標의 内容 (1985年 White Paper)

- 1985년에 발표된 EC집행위원회의 白書 (White Paper)는 크게 物理的, 技術的, 財政的 장벽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 가. 物理的 障壁의 除去

##### (1) 通行制限의 철폐

- 현재 EC가맹국의 여행자는 출입국 관리와 징세를 위해 국경에서 檢問을 받고 있지만 '92년까지 域内 국경은 완전히 철폐되며, 출입국시의 검문은 예외적으로 불시 검사에 한정된다.

- 국경검사 완화에 수반되는 치안대책으로서는 통일유럽여권 이용의 促進, 가맹 각국 경찰의 협력강화가 도모되는 반면, 域外 국경에서의 檢查는 강화되고 제3국민의 가맹국간 이동에는 공통의 정책이 취해진다.

- 또 間接税의 조정을 통해 가맹국의 여행자는 국경에서 輸入税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 (2) 物資의 移動

- 현재는 가맹국간을 왕래하는 物資도 국경 검사를 받고 있으며 징세, 통계 데이터 수집, 動植物 검역, 輸出入제한품목의 허가 등을 이유로 운송업자는 국경에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88년부터는 행정적 검사가 簡素化되어 제출서류도 「단일행정서류」로 통일되었으며, '92년까지는 農業·衛生·運輸에 관한 가맹국의 정책이 조정된다.

##### (3) 運輸

- 현재 EC 가맹국간의 運輸에는 외국 운송업자의 운송便數를 제한하는 割當制가 존재하지만 '92년까지는 便數割當制가 완화된다.  
- 또 공통운수정책 실시에 수반하여 域内 운송업자는 전가맹국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나. 技術的 障壁의 제거

##### (1) 財貨의 自由移動

- 현재 가맹국들은 제품에 관한 規制나 基準(安全基準, 衛生·環境基準, 消費者保護기준 등)이 相異하고 제조업자는 제품을 각국의 규정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생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되는 生

產, 流通 Cost는 막대하다.

- 각국의 규제나 기준은 소비자에게 최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제품수입을 방지하고 自國產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소위 非關稅障壁).
- 이러한 상황에 대해 EC위원회는 域內 소비자를 평등하게 충분히 보호하고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수준에서 統一基準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그러나 域內에서 生産되는 모든 제품을 기술적으로 세밀한 부분에까지 統一基準을 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일된 規定 · 基準은 상호 승인에 맡겨진다.

## (2) 勞動力의 自由移動

- 현재는 가맹국간에 교육방법과 교육수준의 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1個國에서 學位를 취득해도 他國에서는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또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업에 관해서도 각 가맹국은 자격, 경험 등에 일정한 필요조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他國에서 영업하기 어렵다.
- 이에 대해 EC위원회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學位, 전문직업자격을 가맹국이 상호 승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3) 서비스 共同市場

- 經濟의 Soft化에 수반하여 서비스 部門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가장 자유화가 낙후되고 있는 분야로서 EC도 그 예외가 아니다.
- EC위원회의 自由化 제안은 輸送, 銀行, 保險 등의 전통적 서비스에서 情報技術, 마케팅, Audio Visual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分野도 포함시킨다.

## (4) 金融 서비스

- 銀行감독기준의 統一과 資本移動의 自由化를 2개의支柱로 근본적 개혁이 행해진다.
- 銀行감독기준의 統一은 「本國當局에 의한 監督」(Home Country Control)의 원칙에 의거한다.

- 또 域內 資本移動의 자유화 조치로 소비자는 가맹국의 어디에서나 保險 · 投資 · 銀行 · Mortgage · 有價證券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4) 運輸 서비스

- 運輸部門은 공동체 GDP의 7%를 차지하고 그 서비스는 광범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運輸部門은 공동체에서 가장 큰 규제와 보호를 받아 왔다.
- 따라서 EC위원회는 道路, 鐵道, 内陸水路, 海上輸送, 航空 등 모든 수송형태의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提案을 하고 있다.

## (4) 新技術

- Audio Visual, 情報, Data 처리, Computer, Microprocessor 등의 新技術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개의 新技術마다 가맹 각국이 따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 (4) 放送

- EC위원회는 공동체 전역에서의 자유로운 방영을 보증하고 EC Program 제작, 送受信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 제안이 실시되면 技術的 · 法律上의 장벽이 제거되고 전유럽적인 규모로의 Audio Visual 지역이 창설되게 된다.

## (4) 政府購買

- EC의 政府購買 시장은 550億 ECU(GDP의 15%) 규모로 정부 구매방식의 공개촉진은 EC통일시장 창설에의 파급효과가 큰 반면, 정부 구매시장은 지방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현지업자와 관계가 깊은 시장이기도 하다.
- EC위원회의 제안은 中央政府 · 地方政府에 관련된 財貨 · 서비스의 구입, 건설사업의 계약 등 모두에 國產 · 外國產을 구별하지 않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 구매관계자측에는 ① 入札 등의 정보공개 ② 조달하는 財貨, 서비스의 기준, 조건의 명확화 ③ 사전에 공표된 수속에 의한 공정한 계약이 의무화되어 있다.
- 또한 SEA에 안전보장상의 협력이 제창되

고 있고 무기조달시장의 개방도 검토되고 있다.

#### (4) 法的・行政的 障壁

-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법제상, 행정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EC위원회는 商標·特許·著作權 등의 知的所有權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공동체로서의 태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다. 財政的 障壁의 제거

- 현재 가맹각국의 間接稅 稅率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바, 국경관리의 철폐 후에도 간접세 세율이 불균형을 나타내면 제품·서비스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왜곡되고 貿易上의 경쟁을 왜곡하게 된다.
- 따라서 EC위원회는 VAT를 標準稅率 14~20%, 低稅率 4~9% (식료품·전력공급 등의 생활필수품)의 2 단계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동시에 담배·석유·알콜·연료 등의 제품에 부과되는 消費稅에 관해서도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그러나 新稅制의 도입이나 기존 세제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극히 미묘한 문제이며, 더구나 간접세 統一에 관한 閣僚理事會의 결정은 全會員의 찬성으로 행해져야 한다.
-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英國으로서 稅收에의 영향은 작으나 ('87年度에는 35億pound의 財政黑字), 현재 非課稅對象인 식료·서적·아동복에 대한 課稅는 정치적 이유로 難色을 표하고 있다.
- 반면 재정에 대한 영향이 심각한 것은 아일랜드와 덴마크로서 VAT 標準稅率이 각 25%, 22%로 높기 때문에 VAT 통일에 의해 稅收에 큰 결함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현재 間接稅의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나 EC위원회는 貯蓄에 대한 稅率, 法人稅率까지의 조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表 1〉 附加價值稅率의 比較

(單位 : %)

國名	稅率段階數	低稅率	標準稅率	高稅率
벨기예	6	1.0& 6.0	19.0	25.0& 33.0
덴마크	1	-	22.0	-
서독	2	7.0	14.0	-
스페인	3	6.0	12.0	33.0
프랑스	4	2.1~ 7.0	18.6	33.3
아일랜드	3	2.4& 10.0	25.0	-
이탈리아	4	2.0& 9.0	18.0	38.0
룩셈부르	3	3.0& 6.0	12.0	-
네덜란드	2	6.0	20.0	-
포르투갈	3	8.0	16.0	30.0
영국	2	0.0	15.0	-
그리아스	-	6.0	18.0	36.0
EC제안	-	4~9	14~20	-

[資料] EC Commission, 1988

## 2. 進展狀況 ('89年初 現在)

### 가. 概括

- 당초 市場白書에서 제시하였던 案件의 數는 300개였으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제안의 통폐합으로 1988年 5月에 292개, 1988年 9月에 286개, 1989年 4月 현재 279개로 축소되었다.
- 시장통합과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진행과정들이 잘 연결되고 있지 않으며, 各分野別로 진척의 정도가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현재로서 勞動이나 資本의 자유로운 이동, 域內企業의 協力體制 強化에 대한 提案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으나, 동식물 위생, 규격의 표준화 및 단일화, 의약품, 보험, 지적소유권, 부가가치세, EMS 등의 분야에서는 각국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나. EC統合과 影響力의 增大

#### (1) EC統合의 진척 상황

- 1992年末을 목표로 역내시장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EC통합은 현재 物理的, 技術

的 장벽의 철폐, 財貨 이동의 자유화, 서비스共同시장 구축분야 등에서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 다. 個別項目別 進展 狀況

### (1) 技術的 障壁 (Technical Barrier) 的 제거

#### (a) 技術的 調和와 標準化

- '85년 5월 閣僚理事會에서 승인된 技術的 조화와 標準化를 위한 '새로운 接近方法'은 이 분야에서의 執行委의 제안에 기초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제안된 항목의 결정과정을 가속화시킨다.

- 그 결과 閣僚理事會는 機械의 안전장치와 인체보호장치에 대한 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壓力管 (Pressure Vessels) 과 장난감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채택했고 建造物과 電磁氣의 호환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 法條文의 부문간 조정이 필요한 특수한 부문에서는 執行委의 다수결원칙이 이 分野의 조화를 가속화시킨다.

#### (b) 政府購買

- '88년 閣僚理事會의 공공적인 공급계약에 관한 지침과 公共事業에 대한 공동적 입장의 채택으로 무선통신·에너지·운송과 水利분야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防衛物資 문제는 EC조약의 규정과 市場單一化法의 유럽협력규정에 의거하여 다루어 질 것이다.

#### (c) 勞動力의 자유로운 이동

- 현재 건축사, 의사, 의료종사인 등의 전문직에 대한 學位는 상호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專門職에 대해서는 專門教育履修學位 및 3년 이상의 전문교육에 대한 상호인정指針의 채택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 (d) 서비스

##### 〈金融서비스〉

- 執行委는 金融市場 단일화의 핵심인 자본 자유화를 위하여 白書 속에 포함된 銀行部門內의 모든 제안을 閣僚理事會에 제출중

이며, 執行委제안의 접근방향은 크게 다음의 3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공동체내 각국에 支社 설치 및 영업활동을 허가해 주는 單一認可 시스템 도입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관한 공동규제 제정

○ 自國統制原則 (Principle of Home Country Control)

-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분야에 대한 지침 및 轉換證券에 대한 공동투자보증시장의 단일화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신용기관들을 완전히 개방하고 이 기관들을 통제하는 공동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 〈新技術〉

- Tele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감안, 執行委는 '87년 6월 서비스부문과 통신기기부문共同市場發展에 관한 綠書(green paper)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 담긴 방안은 '88년 6월 閣僚理事會에서 승인된다.

- 정보서비스 분야의 R&D 프로그램(예 : AIM, DELTA, DRIVE 등), 통신 서비스분야의 RACE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공동의 표준과 體系의 도입이 추가적으로 필요

##### 〈放送〉

- 유럽放送網의 확립은 위성통신, 高畫質의 TV방송을 위해 프로그램 생산 산업에 기술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표준의 도입을 의미하는 바, 이는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전송·送受信 자유의 제안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다.

#### (e) 資本移動의 자유화

- '88년 6월 24일 閣僚理事會는 指針 (자본 이동 완전자유화)과 規則 (공동체 각국의 中期 國際收支조정을 위한 기구설치)을 채택한 바 있다.

- 이 지침은 '90년 7월에 發效되는데 일부회원국에게는 '9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치의 適用猶豫(Derogation)가 예상된다.

- 이 지침에 뒤이어 執行委는 국별 預金課稅

制度의 차이에서 생기는 각종 왜곡 및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89년 6월까지 취하도록 제안한다.

(b)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強化

- EMS는 79년 3월 설립 아래 당초 상정된 ECU Zone이라기보다는 DM Zone으로 기능을 해 왔다.

〈ECU의 發展〉

- 근간 민간부문의 ECU 이용이 팔목 할 만한 신장을 보여 비록 유통되는 ECU 지폐는 존재하지 않지만 外貨預金의 일종으로 ECU 기준예금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CD, Credit Card, Travelers Check가 발행되고 있다.

○ 서독 : '87년 6월부터 거주자 ECU 기준 예금, 차입의 인가

○ 프랑스·이탈리아 : ECU 기준 인보이스를 적극 추진 중.

- ECU 기준 자본시장의 발전도 현저하여 유로債市場에 있어서 달러, 마르크, 파운드와 더불어 주요발행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CU 기준 채권의 종류도 고정금리債, 변동금리債, Zero Coupon債, Deep Discount債, 전환社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그러나 개개의 발행액이 소규모라는 점, Market Maker 층의 희박함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성이 크며 최후의貸出者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單一通貨로 등장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c) 기업간 협력을 提高시킬 여건 조성

- 社會法과 課稅 : 협조측면에서 거의 진전이 없으며 각會員國들은 역내기업간의 협력을 막는 재정적 장애물 제거에 대해 난색을 표명

- 知的소유권 및 工業소유권 : 國籍別 상표법, 조정 협약과 集積回路 보호가 채택되었으며 著作權 및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협력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 域內 企業體間의 협력을 신속하게 해 줄 BC-NET(Bus-

iness Cooperation Net Work)는 '89년 7월에 가동예정이며', 이를 통한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執行委는 Europat-enariat라는 제안을 제출중이다.

(2) 물리적 장벽 (Physical Barrier) 의 제거

(a) 상품의 通關節次 철폐

- 換統制(exchange control) 및 도로운송허가증의 철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제의 철폐도 취해지지 않았다.

- 公衆 및 동식물 위생에 대한 기준은 회원국간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 執行委員會는 현재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모든 통제를 철폐하는案을 마무리짓고 있다.

- COCOM의 목록에 나타나는 상품의 역내무역 통관절차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연구중이다.

(b) 域內國境에서의 個人에 대한 통제의 폐지

- 약물·망명보호·비자정책·무기소지 등에 대한 執行委員會의 提案은 유럽이사회에서 긴요한 부분을 빼어버렸으므로 현재 上程되어 있는 제안이 가치가 없음.

(3) 財政的 장벽 (Fiscal Barrier) 的 제거

- 각국의 間接稅의 統一 내지 差異 조정은 '85년 6월 유럽이사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國內法개정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 현재 會員國간 間接稅率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경장벽 철폐시 제품, 서비스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 EC委員會는 VAT를 標準稅率 14~20%, 低稅率 4~9% (식료품, 전력공급 등의 생활필수품) 2 단계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담배, 석유, 알콜 연료 등의 제품에 부과하는 소비세의 조정을 시도중이다.

- 新稅制의 도입이나 既存稅制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극히 미묘한 문제로서 간접세의 통일에 관한 각료이사회의 결정은 아직 滿場一致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 간접세의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나 EC

委員會는 저축에 대한 세율, 法人稅率까지의 통일도 도모할 방침이다.

#### (4) 地域法 (Community Law) 的 적용

- 商品의 相互認定: 어떤 회원국에서 합법적이고도 공정하게 생산되어 팔리는 제품은 그 제품이 정당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한, 다른 규격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회원국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 課稅差等 제거: 執行委員會는 二重課稅를 방지하는 원칙을 지지하여 위반절차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고 있다.
- 서비스의 相互認定: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확립된 相互認定의 원리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하였다.
- 勞動力의 자유이동 보장: 이민 노동자들이 조약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교육·공공위생·시민정신을 위한 연구·상업서비스를 관리하는代理人的 국별 차별조항을 없애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 경쟁의 규제 마련: 執行委員會는 각 개인 및 국영회사에 의한 제한적 또는 독점적 행위가 공동시장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방침이며, 기업합병제한에 대해 審理종인 유럽이사회와의 합병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쟁법(Competition Law)을 계속 적용할 것이다.

### 3. 統合目標의 實現 可能性

#### 가. 概 括

- EC執行委員會는 1986年 5月 26日에 白書에 담긴 추진사항의 진척상황을 閣僚理事會와 구주의회에 알리는 제 1차 보고서에서 域內市場의 통합을 위하여 작성한 제안들이 일정대로 신속히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 執行委員會의 제 2 차 보고서('87年 5月)에 따르면 백서가 발간된 '85年 6月부터 '87年 5月까지 겨우 58개의 제안만이 채택되고 物理的 障壁의 제거와 재화의 자유이동

이외의 추진사항에 관한 제한은 거의 채택하지 못했다.

- 執行委員會의 제 3 차 보고서 ('88年 5月)에서는 域內의 시민과 기업이 역내시장 통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 域內市場의 統合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널리 알려 여론을 조성하고, 이 여론을 바탕으로 閣僚理事會에 압력을 넣어 1992年末까지 모든 제안이 채택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즉 EC域內市場 統合은 會員國間의 의견대립으로 예상보다 그 진전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 執行委員會는 閣僚理事會의 의사결정 지연이 의사결정 표결방식, 집행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의 정도, 의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異見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 域內 관측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역내시장통합의 추진속도가 느린 근본적인 이유는
  - 각 會員國이 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권행사의 제약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 공동체 법규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있다는 점.
  - 각 會員國 정부가 곁으로는 域內統合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한다고 공언하지만 속으로는 상이한 모습의 共同體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
  - 각 회원국 정부가 域內市場의 統合을 통하여 다른 會員國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평한 이득을 증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會員國과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점 등이다.
  - 현재로서 執行委員會의 진행보고서를 근거로 할때 域內市場 統合이 1992年 말까지 완

결될 가망은 거의 없다.

○域内市場의 統合을 위하여 閣僚理事會가 이미 채택하였거나 앞으로 채택할 공동체 법규가 각 회원국에서 성실히 준수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執行委員會는 會員國들의 공동체법규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執行委員會의 백서에 담긴 구상이 1992년의 시한을 넘긴 다음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언젠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EC 역내에 고도로 통합된 공동시장이 구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 역내통합이 1992年末까지 완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1993年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992年以前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

○ 기술적 규격과 표준, 특히 선박·장난감·건축자재·전자제품의 部品互換性에 대한 사항들은 거의 채택되었고 飲食物法에 관한 사항도 거의 합의를 보고 있다.

○ 금융서비스 분야도 괄목할 만한 진척을 보여 損害保險規約, 유럽광역의 금융시장 형성, 장기 및 단기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指針이 채택되었다.

○ 정부조달과 共同購買에 관한 지침도 '89년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지침도 채택되었는데 建築家資格證 인정에 18년, 藥師資格證 인정에 16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 운송부문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 '86년 12월에 회원국간 혹은 제3국과의 海上運送 자유화에 합의, '87년 12월에 항공업계의 개방, '88년 6월에는 '92년 말까지 域内道路 運賃peria 페지에 합의하였다.

○ 바이오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기술의 보호도 1992年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SPirit 혹은 BRIT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공동체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1992年以後에도 難航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 각국간 附加價值稅率의 差異 조정

○ 域内 여행자들의 국경통과 절차 및 거주 권리

○ 동식물의 위생기준에 관한 사항

○ 有價證券 공개에 관한 조정

○ 유럽特許 및 商標에 관한 합의

○ 航空運送에 관한 각국 提案의 실행

○ 10年 이상 걸리는 회사설립 과정

## II. 統合의 影響

### 1. 概 括

- EC는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產業分野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 이후 세계적인 產業構造의 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 『高度化된 기술을 要하는 輕工業 및 家電製品 분야에서도 韓國과 臺灣을 비롯한 선발개도국의 추격으로 EC는 과거 美國 및 東南亞市場에서의 점유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域内市場에서도 이들 國家로부터의 輸入增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EC는 낮은 工業生產性, 輸出增加率의 둔화, 失業率의 증대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 〈產業部門의 統合目標와 期待効果〉

- EC統合이 지향하는 產業部門의 통합목표는 資源의 효율적 배분과 生産性 향상을 통한 對外競爭力 提高에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정부입찰의 개방, 통관절차의 폐지, 금융·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경쟁촉진 등이 고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치로써 기대되는 산업부문에서의 일반적 기대효과는 최적생산규모의 유

도, 교역증대 및 生產能力의 增大, 技術革新 및 國제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및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最適生産規模의 유도：生産要素 및 製品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競爭制限要素가 제거되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규모, R&D規模, 수송비, 판매관리,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最小經費支出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제조업분야 뿐만 아니라 金融·서비스 분야에도 적용

○交易增大 및 生產能力의 擴大：市場統合에 의한 直·間接效果로서 소득수준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확대로 연결되어企業은 수요증대에 따른 生產能力의 增大에 힘쓸 것이며, 종래 自國의 내수시장에만 주력하였던 기업들도 EC를 單一市場圈으로 하여 생산규모의 확대를 도모.

○技術革新 및 國제경쟁력 강화：市場統合의 결과 경쟁이 촉진되면 企業側面에서는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R&D 투자가 강화되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전망.

○產業構造 및 企業經營戰略의 변화：

- 관세 및 비관세장벽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던 산업내의 비효율적인 부문은 경쟁과정을 통해 제거되거나 他業種으로의 轉換 등을 도모
- 기업은 生產要素의 效率的結合에 의해 서만生存이 가능하기 때문에 比較優位가 없는 分野는 과감히 매각하고 比較優位가 강한 分野를 特化 또는 新規進出 시도

### 〈產業部闡에 대한 영향과 對應

- EC統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 產業의 업종과 지역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專門化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며 製品差別화가 높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계부품, 의류산업 등을 시장통합으로 인해 專門分野別로 상당한 시장확대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域內國企業은 生산능력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합작이나 기술제휴에 적극 노력.

- EC統合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주로 大企業들로 이루어진 大量生産 分野로 전자, 자동차, 컴퓨터, 통신기기, 사무용기기, 기계, 항공기, 석유화학산업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同分野는 시장규모가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EC정부가 域內該當企業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家電社를 중심으로 몇몇 기업이 동지역에 진출해 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실적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 2. 一般的 영향

### 가. 域內國에의 영향

- 각국간의 利害關係의 상충으로 統合時限인 1992년까지 完全統合의 현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統合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합치로 통합의 정도는 가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EC市場이 單一化되면 EC會員國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共同購買市場의相互開放, 현존하는 國境統制의 폐쇠, 金融서비스의 域內自由化 및 공급증대 등을 통한 生産물 및 生產要素의 최적배분에 따른 經濟의 效率性 提高

○域內 交易費用의 節減(기존행정절차 간소화, 적용법규의 一元化, 통화안정권 형성 및 각종 域內非關稅 장벽 제거)으로 인한 域內商品의 對域外商品 가격경쟁력 제고효과와 域內商品價格 下落. 그 결과 域內購買力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 EC委員會는 市場統合政策이 유발하게 될

효과를 巨視經濟的機能에 따라 4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通關節次廢止

○政府入札 및 公企業 經營參與制限의廢止

○金融·保險의 自由化·開放化

○競爭促進

#### (1) 通關節次廢止로 인한 效果

- 雇 傭

○通關節次廢止로 공무원 및 관련기업 종사자의 실직·이직 현상이 일시적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20만명의 추가고용 창출 예상.

- 代替效果

○通關節차 폐지로 비용절감에 의한 가격 인하 가능

○이에 따라 종래 自國商品 혹은 非EC 지역으로부터의 輸入品으로 조달되던 商品이 EC商品으로 대체 → GDP의 0.4% 성장 요인.

- 國家財政

○短期的으로 통관업무관계 공무원의 축소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

○장기적으로도 경제활성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확대예상

- 物 價

○短期的인 효과는 불투명하나 長期的으로는 통관절차 폐지로 인한 원가인하효과가 경제활성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하여 1.0%선의 물가하락 예상.

#### (2) 政府入札開放으로 인한 效果

- 政府入札이 개방되면 납품업체들의 생산공정 합리화와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國家와 公企業이 직접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 公企業部門의 費用절감은 公共負債의 감축, 租稅負擔의輕減, 公共需要의 직접적 확대 등을 통해 物價下落, EC의 國際競爭力 증대 및 성장기여의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金融·保險의 自由化·開放化로 인한 效果

- 金融市場이 개방되고 현행의 규제조치들이

철폐되면 개별시장에서 金融機關들이 누리던 獨占利益 감소와 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EC의 총 GNP의 0.7%에 해당하는 비용절감 효과의 발생이 예상된다.

○企業의 대출·융자비용의 감소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력 증대에의 여유 발생

- 資本移轉의 自由化가 병행되면 금융자산의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

- 이에 따른 中·長期의 巨視經濟的 효과로는 1.5%의 GNP 추가생산, 1.4%의 물가억제, GDP 1.1% 수준의 국가 재정개선이 기대되며 資本費用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資本의 勞動力 代替現象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40萬名의 고용 창출이 예상.

#### (4) 競爭促進으로 인한 效果

- 競爭促進으로 인한 효과는 各企業이 경쟁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計量化에는 한계가 있으나 각종 技術規制基準의 폐지로 인한 직접비 절감, 규모의 經濟 효과, 競爭 심화에 따른企業의 生產성 증대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와 가격인하에 따른 실질소득증가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예상.

#### (5) 綜合的인 期待效果

- 이상의 효과를 종합하면 EC市場이 統合될 경우 GDP의 4.5% 증가와 6.1%의 物價 하락 효과, 180萬名의 추가고용이 예상된다.

## 나. 域外國에의 영향

#### (1) 主要分野別 影響

#### (2) 主要國別 영향분석

#### (a) EFTA에의 영향

- EC시장통합의 움직임은 EFTA (유럽自由貿易聯合)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으며 EFTA諸國 모두 EC와의 經濟關係가 긴밀하기 때문에 EC市場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 '84년 EC·EFTA 각료회의에서 다이내믹한 유럽經濟圈의 건설을 목표로 一體化와 협

〈表 2〉 EC統合의 域外國에의 影響(主要分野別)

	肯定的側面	否定的側面
政 府 購 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政府購買의 절차 개선(공개입찰, 구매계획·일정의 사전공고)와 자유화로 域內國은 물론 域外國의 기업들도 물자(제품)를 공급할 기회가 확대된다.</li> <li>• '88年 현재 EC전체의 정부 구매시장 규모 : 5,300억 ECU</li> <li>• 中央·地方政府에 의한 계약규모는 GDP의 9%, 국영화 기업까지 포함하면 GDP의 15%에 이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域內競爭國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 政府購買市場에 진출 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li> </ul>
産業·技術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C共同의 研究開發프로젝트에 非加盟國企業의 제한적 참여 가능. 단,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체가 EC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li> <li>• 直接參與는 불가능하고 유럽의 Joint-Venture의 일부로 참여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域內國에의 産業·技術協力強化로 EC 제품의 경쟁력 향상→域外國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li> </ul>
知的所有權, 상표권 및 工業所有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共同特許制度의 창설이 제안되어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域外國 특허권자에 있어서도 특허출원절차 간소화 및 비용의 감소(각 국가별로 일일이 출원할 필요가 없어짐)가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특허승인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회원국(예: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어려워진다.</li> <li>• EC공통의 상표 책정으로 域外國 제품의 상표사용에 더욱 까다로운 규칙의 적용과 유럽상표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보호 예상.</li> </ul>
標準, 規格 및 認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個部門(전기 전자부품, 기계류 등)에 대한 標準, 規格 및 認證의 기준 및 방식의 통일화로 域外國의 歐洲 輸出製品의 원가절감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特定製品(例: 高品位 TV 등)의 경우 유럽 고유의 표준 및 規格의 설정으로 EC市場 진출에 직접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li> </ul>
消費者保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보호기준과 관례에 대한 제안과 모조품 수입금지조항의 채택 등은 域外國 현지기업제품이나 域外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비용의 증가, 판매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li> </ul>
稅 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附價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域外國의 輸入製品에 대해 關稅(域外共通 對外關稅) 이외에 輸入品 감정가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li> <li>• 현재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프랑스·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들은 33~38%의 高附價稅率을 적용.</li> <li>• EC案에서는 세율을 18~24%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어 上記 國家들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8~24%보다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세율상승으로 세액의 추가부담→가격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다.</li> </ul>

		肯定的側面	否定的側面
税制	<p>경우에는 域外國으로부터의 輸入商品에 대해서도 가격하락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 <p>○ 집행위원회는 역내주식에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계유인책을 모색하고 있음 →域外國에도 기회확대 예상.</p>		
金融·서비스	<p>○既 진출해 있는 域外國의 금융기관이 현지법인화하거나 '92년 이전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영업 활동의 범위 및 수익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는 銀行·證券·保險의 진출은 상대국의 혜가나 규제를 받아 왔으나 EC지침이 실현되는 경우 상대국의 혜가나 통제없이 自國의 혜가나 통제만으로 진출가능해짐.</li> </ul>	<p>○EC各國의 域外國金融企業이 진출하려 할때 상대국에 대해 상호주의의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의 金融機關이 相對國內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경우 그 국가의 EC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li> </ul> <p>○EC金融市場의 통합으로 EC金融 서비스業의 國際競爭力이 강화되어 통합후에 域外國의 EC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p>	
勞動力	<p>○勞動者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으로 域外國 현지기업의 경우에도 인력확보에 따른 유리한 영향이 예상.</p>	<p>○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강조는 域外國企業들의 현지인 고용 및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이외에도 EC위원회는 Part Time 노동의 장려, 임시노동과 노동기간의 삭감 및 재조정등의 지침체택 문제도 역외현지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이다.</p>	

력강화를 합의한 이후 EC·EFTA는 擴大 유럽市場의 창설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다.

- 그러나 EC側은 市場統合 Program마다

EFTA와의 조정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労動力과 시간, 規制變更時마다 EFTA 諸國과 상의할 필요가 발생하는 점 등 EC의 獨立性과 직결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 EFTA側은 '92年 EC市場統合이 政治同盟

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EFTA 諸國의 외교적 中立政策(노르웨이 例外)이 손상될 위험을 우려한다.

- 兩側間 相互交易 측면에서 본다면 EC와 EFTA는 擴大統合을 위해 協調路線을 걷지 않을 수 없다.

○EFTA의 EC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57%로 极히 높다.

○EC의 對EFTA 의존도는 10%에 불과하나 對EFTA 收支는 100億弗이 넘는 黑子

를 보이고 있다.

- 國別 影響

〈스위스〉

○EC는 經濟同盟에서 政治同盟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EC加盟은 스위스의 永世中立國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EC 가맹은 불가능하다.

○스위스는 EC의 새로운 Rule에 따름으로써 간접적으로 統合市場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大企業들은 EC域内로의 直接投資를 增加시킴으로써 市場統合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있으나 스위스 製造業部門의 大多數인 中小企業은, 사실상 타개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스위스 경제전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2000년까지 오스트리아의 EC 非參加가 계속되면 貿易赤字는 1,100億 실링에 달하고, EC參加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EC 市場에 있어서의 Market Share는 1.5% 增加하지만 非參加의 경우는 1.5% 감소 예상(오스트리아 응용사회연구소)

○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EC加盟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나 EC에 加盟하는 경우에도 永世中立國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프라니키首相)

### 〈스웨덴〉

○ 스웨덴 產業聯盟의 Report에 의하면 제조업의 EC로의 擴張的 재배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백만 달러, 1萬名分의 고용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High-Tech 產業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의 空洞化가 우려되나 社會民主党政權은 中立路線을 이유로 EC加盟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國內法을 EC Rule에 조화시킨다면 北유럽형 복지국가의 理念이 동요해 위협이 있다.

○ 또 스칸디나비아 諸國은 通貨 바스켓을 이용한 엄격한 外換管理制度를 채택하고 있고, EC加盟에 의해 資本移動이 자유로워지면 外換時勢의 대폭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4) 美國에의 影響

- 美國의 EC 統合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EC統合이 域外國家들에 대한 'EC요새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前提로 할때 美業界의 歐洲市場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樂觀論이 우세하다.

- 美行政府의 입장은 EC市場統合이 市場障壁의 축소와 단일巨大市場의 탄생을 가져와 美企業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EC의 地域主義의 강화에 따른 對美輸入規制障壁의 강화를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 EC市場統合에 대한 美國側의 일반적인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銀行 및 기타 金融・投資分野에 대한 분야별 相互主義 적용논리는 GATT의 相互主義에 입각한 무역자유화조치와는 상치된 이념으로서 이 개념이 美國의 現子會社 설립과 관련해 적용될 경우 지극히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다.

○ OECD가 독자적인 標準化 및 認證制度를 도입할 경우 域外競爭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와 다름이 없게 된다.

- 특히 EC의 金融部門에서의 相互主義指針提案에 대해서는 美國 金融機關에 대한 차별대우 및 內國民 우대 원칙과 資本自由化를 위한 OECD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EC가 통합됨으로써 美國에는 긍정적・부정적 경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나 EC와 美國間의 政治的・經濟的인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EC統合은 美國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肯定的 影響〉

○ 현재 EC諸國에 진출하고 있는 美國企業의 子會社들이 EC諸國間의 交易障壁을 완전히 제거함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 현재 EC諸國에 진출하고 있는 美國企業들은 EC 전체를 하나의 市場으로 보고 營業活動을 하고 있어 사실상 '92年の統合 이후에는 EC諸國의 企業들보다도 더 빨리 적용해 나아갈 것이므로 경영환경은 더욱 호전될 것이다.

### 〈否定的 影響〉

○ EC諸國의 統合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의거 제3국시장에서의 競爭深化 및 市場占有有率의 상실이 예상되고 있으나 美國의 전반적인 전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로 인해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 美國은 EC의 요새化에 대비 日本, 臺灣, 韓

國, 泰國, 菲律賓, 濟洲,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太平洋沿岸國家와의 自由貿易協定 체결을 통해 EC에 대응하는 경제블럭화를 구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d) 日本에의 影響

##### 〈肯定的 影響〉

- 거대한 統一市場의 형성에 의해 輸出增加 및 投資增大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EC와 COMMECON의 접근, EFTA諸國과의 협력 강화에 따라서 규모의 經濟性 추구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市場의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 EC內 尖端產業市場의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日本은 EC域內 經濟의 견실한成長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 日本의 對EC貿易의 비중은 최근에 들어서增加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EC統合의 영향으로 日本과 EC間의 貿易增大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表3〉 日本의 總貿易 중 對EC貿易의 比重  
(單位: %)

年 度	對EC輸出	對EC輸入
1983	12.6	6.4
1984	11.4	6.8
1985	11.4	6.8
1986	14.7	11.1
1987	16.4	11.8

##### 〈否定的 影響〉

- EC統合은 世界經濟의 Bloc化 추세를 가속화시켰으며 그 영향은 美·加 自由貿易協定을 체결시켰음. 近隣地域과의 分業구조 및 同盟關係가 약한 日本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교섭력이라는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 EC의 對日戰略은 統一市場의 利益保護와 尖端產業의 경제력 회복을 목적으로 日本企業의 質이 높은 投資를 수용하고 EC 내의 產業을 보호하면서 강력한 相互主義를 무기로 日本市場의 개방을 시도하는 것이다.
- 이러한 相互主義는 특히 金融分野에 심각

한 影響을 끼칠 것으로豫想된다.

#### (e) 아시아 NICs에의 影響

- 1888年中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폴의 對EC 貿易額이 170億 달러에 달하여 EC 經濟가 아시아 NICs 經濟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EC의 域內市場 單一化는 아시아 NICs 國家들에 대해 貿易障壁을 강화하여 이미 EC의 反dump制度 件數가 급증하고 있어서 將來 NICs의 對EC輸出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統合市場이 域外國에 대해 나름대로의 利點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肯定的 影響〉

- 單一市場의 완성으로 EC의 經濟成長이 가속화될 경우 NICs諸國이 교두보 마련에 성공한다면 EC의 輸出需要 增大 및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對EC輸出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NICs 國家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개별 EC 회원국과의 通商協商에서 탈피, 통상절차가 간편화여지고 태협도 용이.
- 附加價值稅率이 單一化될 경우 EC로 輸出된 아시아 NICs 製品들의 EC 域內流通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 〈否定的 影響〉

- 상대적으로 勞動集約의 ی 제품(纖維·신발) 등을 輸出하고 있는 아시아 NICs 國家들은, 이를 산업분야에 대한 EC의 補助金支援이나 각종 특혜에 의해 輸出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 市場單一化를 통한 EC企業의 체질강화로 아시아 NICs企業은 마케팅 능력과 海外市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對EC企業과의 경쟁에서 열세 예상.

### 3. 主要產業別 影響

우리나라와 EC와의 主要關聯產業인 電氣·電

子產業을 중심으로 EC統合에 따른 域内·外國 입장에의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EC統合의 電子產業에의 影響

### (1) 域内國 電子產業에의 影響

- EC統合은 EC 차원의 공공조달, 규격의 표준화, 研究開發 Project의 공동실시 등으로 電氣, 電子 通信分野에 있어서도 域内國間의 公共費用의 절감효과, 交易障壁의 해소로 인한 시간 및 노동력의 감소효과, 技術水準의 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공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共同研究開發 Project를 통해 技術水準을 제고시키고 產業間 技術協力を 도모하게 되며 특히大型 Project의 財政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도적인 인적, 기술적, 학문적 교류의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知的所有權, 新技術開發 등의 협력 및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公共調達의 EC窓口 一元化로 인해 규격의 통일, EC市場 조달선의 單一化, 域外國에 대한 域内 기술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產業別 영향을 보면 電子分野, 특히高度의 技術的 water準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情報·通信分野에서 技術競爭력을 제고시키고 域外國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공공조달을 하며 域内業體끼리는 「競争」을 유발시켜 技術水準의 상향조정을 도모한다.

- 한편 「規模經濟」가 生산이외의 多工場統制, 마케팅, R&D, 資金調達 및 輸送費部門 등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電氣·電子分野는 마케팅 Cost, 運送經費 등이 판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EC統合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R&D投資의 경우 EC가統合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技術革新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EC域内 電氣·電子業體라 할지라도 特許, 市場性, 技術性을 고려, 危險分散이 가능한 共同研究,

技術協力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 (2) 域外國 電子產業에의 影響

#### (a) 「規模經濟」적용에 따른 영향

- EC統合으로 규모경제가 달성된다면 EC內의 電氣·電子 및 通信分野企業은 원가인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域外國업체에 대한 EC內業體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 品目別로 보면 電氣모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通信裝備 등이 규모경제에 의해 가격이 인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 (b) 標準, 規格 및 認證統一에 따른 영향

- EC內統合된 標準 및 規格, 試驗, 認證에 대한 작업은 EC 각국간의 마찰과 규격의 불일치로 인해 진행이 느리며 각각의 部品/製品에 대한 規格統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콘덴서 및 플리그 등 家電製品 部品은 통상 3~4個의 서로 다른 規格의 제품이 있어 域内國間의 통합이 어렵다.

○家電分野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EC標準化 수준이 12個國 平均水準으로 될 경우 과거부터 西獨의 DIN, VDE, 英國의 BSI 등 높은標準化 수준에 맞추어온 韓國業體의 경우 오히려 技術水準面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겠으나 「安全 및 衛生에 관한 規制」에 대한 대비와 단일화된 EC規格에 대한 사전조사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產電分野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EC域内 產業保護를 위해 技術障壁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완전공개입찰보다는 技術水準 및 EC共同研究開發 Project에의 참여도 등을 감안한 제한입찰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 EC內標準化 機構들로서 民間團體인 CEN, CENELEC, CEPT 등 외에 역시 민간단체로서 IEC(國際電氣技術委員會)가 있는데 IEC는 ISO(國際標準化機構)와 協力하며 EC內標準化作業을進行중이다.

〈表 4〉 ISO/IEC Guide 21에서 採擇된 國家 및 國際規格의 關係表現方法

내 용 (Description)	표 현 (Designation)	약 어 (Abbreviation)	기 호 (Symbol)
기술적 내용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표현방법에서도 완전히 일치함.	Identical	IDT	≡
기술적 내용에서는 일치하지만 표현방법에서는 일치하지 않음.	Equivalent	EQV	=
기술적 내용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관련이 있음	Not Equivalent	NEQ	≠

(a) EC域内 公共調達開放에 따른 영향

- EC域内國의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 EC次元에서 단일화된 절차에 의해 실시된다면 韓國 등과 같은 域外國들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갖게 될 것이다.
- 產電分野에 있어서의 공공조달 형태는 美·日等 先進國에 대하여는 시장을 개방하고 技術協力 등의 과정을 거쳐 域內產業의 技術競爭力を 제고시키고 韓國 등 產電分野의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國家에 대하여는 공개입찰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韓國의 對EC輸出 主宗分野인 家電分野에 있어서는 產電분野에 비해 技術水準이나 규격의 제한과 같은 「制限購買」보다 「公開入札」(Open Purchasing)을 통한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격경쟁력과 품질면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家電部門製品에 대해서는 100% 市場을 개방하고 핵심장비(core equipment)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기술수준을 상향, 개방할 것이다.
- 공공조달에 의한 市場擴大措置로서 긍정적인 영향은 복잡한 조달절차 및 輸出節次의 간소화 및 비용절차효과가 있고 대량 조달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음. 이 경우 EC側이 제시하는 技術 및 규격제한을 사전 검토하여 기술사항 검토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b) EC共同研究 Project에 미치는 影響

- EC는 美·日과의 技術格差를 줄이기 위해 域內企業間 電氣·電子·通信 등 尖端產業分野에서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중이며 EC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情報 및 通信 등 高度技術을 요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 또한 電氣通信 등 尖端產業技術은 先進國間의 경합이 치열하고 國家間 利害對立이 침예하기 때문에 共同協力領域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주기가 빨라 공동연구를 어렵게 한다.

(3) 우리나라 電子產業에의 影響

- EC통합이 域內國 및 域外國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때 우리나라 電子產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肯定的 影響〉

- 標準化에 따른 EC規格의 技術的 수준이 종전의 높은 수준이었던 英國, 西獨 등의 수준보다 下向調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業界로서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

○ 종래 우리나라 업체의 輸出分野였던 家電分野에 대하여는 공공조달의 방법상에 있어서 큰 제약요소는 없으며 技術的 수준의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우리 업계로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否定的 影響〉

-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고 EC內市場構成比도 높은 產電(정보·통신 포함)分野에 있어서는 域內產業을 보호하기 위

해 높은 技術的 장벽을 통해 공공조달 및規格統一, 共同研究開發 Project 참여 등에 대하여 선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產電分野 진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 家電分野에 있어서의 否定的인 영향은 EC 내 새로운 규격이 아직 통일되고 있지 않아 EC 규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입수하여 통합이 되기 전 EC規格 試驗·認證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 III. 對應方案

- EC 統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EC市場의 확대로 인한 輸出 및 진출 기회의 擴大를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保護主義의 강화와 우리나라 商品의 EC自體商品으로의 代替效果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은 產業의 종류와 企業의 규모, 輸出市場先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對應戰略도 상당히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電氣·電子分野의 경우는 内需보다도 輸出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EC統合의 영향이 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EC統合이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企業의 對應方向은  
① 保護主義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② EC市場擴大 및 輸出入 및 進出擴大 방안 강구  
③ EC의 高技術 활용을 위한 방안 강구가 될 것임.

- 따라서 EC統合의 利點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世界優良企業 또는 유럽에서 성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戰略方案이 要求된다.

○ 우선적으로 EC統合의 分野別 내용과 진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情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단기적으로는 業種別로 効率의 EC統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戰略의 Key Point는 현지화(Insiderization)에 두어야 할 것이며 金融部門의 경우에는 銀行業, 保險業, 證券業의 본격적 進出 이전에 별도의 現地金融會社의 설립 필요성과 위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餘力이 있는 大企業 등의 경우에는 유럽에 진출한 관계회사를 지휘·총괄하는 Holding Company 성격의 歐洲本部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中小企業의 경우는 관련조합이나 업종별 단체의 後援下에 공동 진출 내지 現地企業과의 합작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大企業들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對應戰略을 일부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 電子·電氣部門 :

• EC現地企業으로의 立地는 구축하되 投資形態(단독투자, 계열기업간 합작투자, 현지 EC內 기업과의 합작투자, M&A)는 신중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生產을 위한 現地法人의 설립과 아울러 판매, 輸送 및 保管을 전담할 현지 법인의 설립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